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334호 2018. 2. 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4호 도시관리계획(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0호 공시송달공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4호 (재)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신규 직인 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 3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5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24호

도시관리계획(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계획취지 : 도시관리계획(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검암동 636-9번지, 533번지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검암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661,144.5	감) 654.2	660,490.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654.2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02호로 고시된 검암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검암1지구 내 근린공원(10호)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 검암1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3,302.9 (2,158.4)	감) 654.2	662,648.7 (2,158.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0,268.8	감) 654.2	379,614.6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044.4 (2,158.4)	-	168,044.4 (2,158.4)		( )구역 외 면적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989.7	-	114,989.7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654.2	80%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어 용도지역 환원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공 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636-9	654.2 (296,396)	감) 654.2 (296,396)	-	건고66-2701 (`66.8.3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0	검암 근린공원	감) 654.2㎡	▪ 인고 제2016-202호로 고시된 검암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검암1지구 내 근린공원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검암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408,826.0	감) 743.6	408,082.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6-1번지 일원	743.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02호로 고시된 검암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검암2지구 내 근린공원(10호)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 검암2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8,826.0	감) 743.6	408,082.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3,939.0	감) 743.6	203,195.4	49.8	
제2종일반주거지역	73,066.0	-	73,066.0	17.9	
제3종일반주거지역	131,821.0	-	131,821.0	32.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743.6	80%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어 용도지역 환원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제한 내 용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고도 지구	최 고 고도지구	검암동 519-1번지 일원	5층 이하	154,282.0	감) 154,282.0	-	인고 2000-113 (`00.6.30)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고도지구	감) 154,282.0	▪ 인고 제2017-235호로 고시된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고도지구 폐지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공 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0	검암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33	743.6 (296,396)	감) 743.6 (296,396)	-	건고66-2701 (`66.8.3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0	검암 근린공원	감) 743.6㎡	▪ 인고 제2016-202호로 고시된 검암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검암2지구 내 근린공원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구보 게제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 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동로 82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2-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133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2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6-107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32 (경서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8-1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6 (가정동)	20121025	" 봉오재" 란 옛지명을 반영한 세번째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3	인천광역시 서구 옹주물로 220 (불로동)	20091217	마을 명칭을 이용하여 옹주물로로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26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21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8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22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8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44 (왕길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8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20번길 9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37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4번길 7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7번길 13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2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50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79-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10-14 (경서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1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31 (원창동)	20171025	북항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엘리트 체육계와 생활 체육계의 통합으로 기존 생활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및 지도자 육성을 포함하여 정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부문을 아울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변경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조항 신설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수 및 지도자 지원 포함
○ 기타 ‘생활체육’ 문구를 ‘체육’ 문구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4,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엘리트 체육계와 생활 체육계의 통합으로 기존 생활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정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및 지도자 육성을 포함하여 정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부문을 아울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변경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조항 신설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수 및 지도자 지원 포함

○ 기타 '생활체육' 문구를 '체육' 문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지원함”을 “정함”으로,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및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2조의 제목 “(생활체육의 장려)”를 “(체육활동의 장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전문체육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을 “전문체육을 진흥하고 구민”으로,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체육단체”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생활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생활체육행사”를 “체육행사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제3조제2항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생활체육 관련”을 “체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은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체육 ---------- ---------- 정함---- ---------- ---------- 체육 ---------- ---------- ----------.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및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조(체육활동의 장려) ---------- 전문체육과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민----------.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생활체육 관련 국제교류 경비 3. (생 략)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제3조(보조금 지원) ① ---------- 전문체육을 진흥하고 구민---------- 체육단체---------- 보조금을 ----------. ② ----------. 1. (현행과 같음) 2. 체육 ---------- 3. (현행과 같음) 4. 체육진흥----------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	5. 체육 ---------- 체육행사 및 운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삭 제>
<신 설>	8.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체육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위원의 구성·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구성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평상시 : 재난 및 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안전총괄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실)
- 전화번호 : 032)560-4704 (팩스 : 032)560-2735)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위원의 구성·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구성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평상시 : 재난 및 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3. 참고사항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협의 및 전개

제8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대응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14호

(재)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신규 직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직인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조한 직인의 인영을 동규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재)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이사장

1. 서구문화재단 신조 사유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이사장인, 물품출납원인, 징수관인, 지출원인, 재무관인, 수입금출납원인, 물품관리관인, 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인, 채권관리관인, 채권채무출납원인, 채무관리관인, 채권채무분임출납원인을 신조함

2. 신조직인명 및 인영 : “별첨참조”

인 영 부

직 인 명	인 영	직 인 명	인 영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이사장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물품출납원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징수관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지출원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재무관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수입금출납원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물품관리관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수입지출외현금 출납원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채권관리관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채권채무출납원 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채무관리관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채권채무분임출 납원인	 2018년 1월 31일 현재 신조등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0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

○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변경

○ 안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의 제3호 신설

○ 안 제2조제3호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안전총괄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실)
- 전화번호 : 032)560-4702 (팩스 : 032)560-2735)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이었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 까지로 범위가 확대

○ 상위법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사용의 통일과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변경

○ 안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의 제3호 신설

○ 안 제2조제3호의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을 “제27조에 따라”로, “규정함으로서”를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을 “ “보행자 전용도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순으로 한다.”를 “순(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순으로 한다.”를 “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로서”를 “호로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 후단 중 “다음날”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제27조에 따라 ---------- 규정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1. ----란 ----------.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란 ----------.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	3. ----란 ----------

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 ----------.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란 ---------- ---------- ---------- ---------- ---------- ---------- --.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 ---------- ---------- ---------- --.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란 ----- ---------- ---------- ---------- ---------- --------.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란 --------- ---------- ----------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 1. ---------- 경우: ---------- 순(順) 2. ---------- 경우: ---------- 순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서 예시도는 별첨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호로써 ----------. 1.·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6.7.8, 개정 2016.7.8.)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 다음 날 ---------- 다음 날 ----------.

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 · 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11.3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01.07.), 동법 시행령 개정(‘17.01.08.)중대본 운영규정 제정(’ 16.04.25.),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대본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 (지대본 운영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변경
- (상황판단회의 소집)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대본 운영규정 내용 반영

- 자연재난·사회재난 지대본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안전총괄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실)
- 전화번호 : 032)560-4704 (팩스 : 032)560-2735)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6.01.07.), 동법 시행령 개정(‘17.01.08.)중대본 운영규정 제정(’ 16.04.25.),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대본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의 수습 등’ 으로 변경
- (지대본 운영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변경
- (상황판단회의 소집)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대본 운영규정 내용 반영

- 자연재난·사회재난 지대본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 추가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

3. 총괄조정관: 안전총괄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6. 실무반: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

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6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관련 실·국장 및 과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서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상황관리 총괄반	1)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협업기능반	1)긴급생활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재난현장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

		・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3)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4)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5)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시・도, 시・군・구 복구현황 파악
	6)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업무와 역할</th></tr>
<tr><td rowspan="2">가.재난상황 총괄반</td><td>1)상황관리 총괄팀</td><td colspan="2">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td></tr>
<tr><td>2)수습상황 파악팀</td><td colspan="2">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td></tr>
<tr><td rowspan="8">나.협업기능반</td><td>1) 긴급생활안정지원반</td><td rowspan="8" colspan="2">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td></tr>
<tr><td>2) 재난현장환경정비반</td></tr>
<tr><td>3) 긴급통신지원반</td></tr>
<tr><td>4) 시설피해응급복구반</td></tr>
<tr><td>5)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td></tr>
<tr><td>6) 재난수습홍보반</td></tr>
<tr><td>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td></tr>
<tr><td>8)교통대책반</td></tr>
</table>

	9)의료・ 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사회질서 유지반	
	12)수색, 구조・구급반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서구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인재육성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미디어과 기획예산실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실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실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실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안전총괄실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경제에너지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소관 부서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환경보전과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실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과 교통민원과 안전총괄실 건설과 환경보전과 교통민원과 교통민원과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경제에너지과 환경보전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과 소관 부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부서 안전총괄실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에너지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실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서구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서구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서구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서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경계단계

<table>
<tr><td colspan="2">본 부 장</td><td colspan="3">구청장</td></tr>
<tr><td colspan="2">차 장</td><td colspan="3">부구청장</td></tr>
<tr><td colspan="2">총괄조정관</td><td colspan="3">안전총괄실장</td></tr>
<tr><td colspan="2">통 제 관</td><td colspan="3">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td></tr>
<tr><td colspan="2">담 당 관</td><td colspan="3">재난수습주관 부서장</td></tr>
<tr><td rowspan="10">실 무 반</td><td>인 원</td><td colspan="3">총 6+α명</td></tr>
<tr><td>반 장</td><td colspan="3">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td></tr>
<tr><td>1)상황관리 총괄반</td><td>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td><td colspan="2">·안전총괄실</td></tr>
<tr><td rowspan="7">2)협업기능반(α)</td><td>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td><td colspan="2">·희망복지과</td></tr>
<tr><td>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td><td colspan="2">·자원순환과</td></tr>
<tr><td>다) 긴급 통신 지원반</td><td colspan="2">·기획예산실</td></tr>
<tr><td>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td><td colspan="2">·건설과</td></tr>
<tr><td>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td><td colspan="2">·경제에너지과</td></tr>
<tr><td>바) 재난수습 홍보반</td><td colspan="2">·홍보미디어과</td></tr>
</table>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실
		아) 교통대책반	· 교통민원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희망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실)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실)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총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안전총괄실장	
	1)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안전총괄실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안전총괄실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안전총괄실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희망복지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기획예산실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에너지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미디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실
		아) 교통대책반	· 교통민원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희망복지과
		카) 사회질서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실)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	·서부소방서 (안전총괄실)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총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안전총괄실장	
	1)상황관리총괄반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실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안전총괄실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안전총괄실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희망복지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기획예산실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에너지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미디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실
	아) 교통대책반	· 교통민원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희망복지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실)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실)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서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서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table>
<tr><td colspan="2">본 부 장</td><td colspan="3">구청장</td></tr>
<tr><td colspan="2">차 장</td><td colspan="3">부구청장</td></tr>
<tr><td colspan="2">총괄조정관</td><td colspan="3">안전총괄실장</td></tr>
<tr><td colspan="2">통 제 관</td><td colspan="3">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td></tr>
<tr><td colspan="2">담 당 관</td><td colspan="3">재난수습주관 부서장</td></tr>
<tr><td rowspan="6">실 무 반</td><td>인 원</td><td colspan="3">총 10+α+β+γ명</td></tr>
<tr><td>반 장</td><td colspan="3">재난수습주관부서장/ 안전총괄실장</td></tr>
<tr><td rowspan="2">1)재난상황총괄반</td><td>가) 상황관리총괄팀</td><td>· 재난수습 주관부서
· 안전총괄실</td></tr>
<tr><td>나) 수습상황파악팀</td><td>· 재난수습 주관부서
· 안전총괄실</td></tr>
<tr><td rowspan="5">2)협업기능반(α)</td><td>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td><td>· 희망복지과</td></tr>
<tr><td>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td><td>· 자원순환과</td></tr>
<tr><td>다) 긴급 통신지원반</td><td>· 기획예산실</td></tr>
<tr><td>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td><td>· 건설과</td></tr>
<tr><td>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기능복구반</td><td>· 경제에너지과</td></tr>
</table>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미디어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실
		아) 교통대책반	· 교통민원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희망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실)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서부소방서 (안전총괄실)
	재난대응협업반(β)		·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ɣ)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경계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비상1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비상2~3단계	가)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서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2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청라동」법정동 설치(신설)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청라동을 설치하고,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관할구역 일부를 청라동으로 편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이메일 elsid@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청라동」법정동 설치(신설) 관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청라동을 설치하고,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관할구역 일부를 청라동으로 편입함.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제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서동,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별	법정동	관 할 구 역
서 구	경서동	경서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경서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전부, 경서동 1016,1016-1,496-10,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526-4,527-1,527-4,570,575,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연희동	연희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연희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연희동,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

구 별	법정동	관 할 구 역
서 구	가정동	가정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가정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원창동	원창동 일원 - 청라동으로 종전의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제외 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

별표 중 심곡동란 다음에 청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별	법정동	관 할 구 역
서 구	청라동	청라동 일원 - 종전의 연희동, 경서동, 가정동, 원창동 일부 편입지역 포함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전부,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 520-31, 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 673-47, 673-48, 673-49, 673-4, 673-50, 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 674-11, 674-13, 674-14, 674-15, 674-16, 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 산139-25, 산148-12, 산148-20 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희동 원창동란 및 경서동 원창동란 각각 삭제하고,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란 다음에 청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서구	계	21		
	청라동	3	청라1동	종전의 연희동, 가정동, 원창동 일부 포함 - 청라국제도시 내 연희동 전부 봉수대로 기준 서측, 중동대로 기준 동측 - 연희동 432-19, 578-1, 578, 579-1, 618-2, 619-1, 620-1, 621-14, 621-2, 621-3, 621-6, 621-7, 621-8, 621-9, 810-11, 810-5, 828-1, 828-2, 828-3, 829-1, 829-2, 830-1, 830-2, 831, 832, 833, 834, 산139-14, 산139-18, 산139-23, 산139-24,산139-25,산148-12,산148-20 - 가정동 58-27,58-29,58-30, 58-31, 58-33, 58-35, 58-39, 58-40,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 일부 중동대로 기준 동측
			청라2동	종전의 경서동, 원창동 일부 포함 -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일부 중봉대로 기준 서측, 청라대로 기준 동측 - 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 일부 중봉대로 기준 서측, 청라대로 기준 동측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청라3동	종전의 경서동, 원창동 일부 포함 - 청라국제도시 내 경서동 일부 청라대로 기준 서측 - 청라국제도시 내 원창동 일부 청라대로 기준 서측 - 경서동 1016, 1016-1, 496-10, 513-2, 513-3, 513-4, 513-5, 513, 514-1, 514-2, 514-3, 514-4, 515-1, 515-2, 515-3, 515-4, 515-5, 515, 516-11, 516-12, 516-13, 516-17, 516-2, 516-3, 516-6, 516-7, 516-9, 517-11, 517-12, 517-13, 517-14, 517-26, 517-29, 517-30, 517-31, 517-32, 517-7, 517-9, 518, 518-17, 518-32, 518-43, 518-44, 518-65, 518-68, 518-70, 518-75, 518-76, 519-20, 519-21, 519-26, 519-32, 519-33, 519-37, 520-22, 520-30,520-31,520, 522-28, 522-51, 522-52, 522-53, 522-66, 522-68, 526-1, 526-4, 527-1, 527-4, 570, 575, 577-2, 594-1, 594, 595, 595-1, 595-2, 595-4, 673-11, 673-12, 673-15, 673-16, 673-17, 673-18, 673-19, 673-1, 673-20, 673-21, 673-22, 673-23, 673-24, 673-25, 673-26, 673-27, 673-28, 673-3, 673-45, 673-46,673-47, 673-48, 673-49, 673-4, 673-50,673-51, 673-52, 673-53, 673-54, 673-55, 673-56, 673-57, 673-5, 673-61, 673-62, 673-63, 673-64, 673-65, 673-66, 673-67, 673-68, 673-69, 673-6, 673-71, 673-72, 673-73, 673-74, 673-75, 673-76, 673-77,674-11, 674-13, 674-14, 674-15, 674-16,674-2, 674, 675, 676, 677-1, 677, 712, 713, 714, 715, 716-1, 716-2, 716, 717, 991, 991-1, 991-2, 992, 산251-10, 산257-10, 산257-11, 산257-2, 산257-3, 산257-4, 산257-5, 산257-6, 산257-7, 산257-8, 산257-9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1.19.]

【 행정안전부 법정동 승인 】

○ 근 거 : 인천광역시 서구 법정동(청라동) 설치 승인 알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1974(2017.12.20.)]

○ 설치(신설) 법정동 명칭 : 청라동(靑羅洞)

○ 관할구역 : 종전의 경서동 일부, 종전의 연희동 일부, 종전의 원창동 일부

○ 관련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